

**2019년도 손실보상액  
공통적용 단가결정**

**2019. 4. 17.**

**익산지방국토관리청**

##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

### □ 감정평가기관 평가·산정

- 토지·물건 등 대부분의 손실보상액\*의 산정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

\* 토지 및 건축물 등 물건, 어업권 등 권리, 농업손실을 제외한 영업보상

### □ 사업시행자 직접산정

- 「토지보상법 시행규칙」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통적용 단가 산출이 가능한 이사비, 주거이전비 등 4종의 보상액은 통계청 등 관계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그 금액을 직접산정

#### < 직접산정 손실보상 종류 및 산정 방법 >

| 보상대상     | 산정 방법   | 비고       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- 이사비    | 통계청 및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보통인부임 및 차량운임을 주택건평 기준에 적용하여 산정 | 시행규칙 제55조 |
| - 분묘보상액  | 전북 및 광주·전남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제출한 '19 분묘이전비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     | 시행규칙 제42조 |
| - 주거이전비* |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·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            | 시행규칙 제54조 |
| - 영농손실액* |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·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                | 시행규칙 제48조 |

- 직접산정 4종의 보상액중 이사비·분묘보상액은 통계청 등 자료가 완비되었으므로 금회산정하되, 주거이전비·영농손실액은 관계기관의 자료 발표가 완비되는 5월말 산정

\* 주거이전비, 영농손실액은 가계조사통계 산출단가 및 농가경제조사 통계자료가 5월말경 국가통계포털(kosis)에 게시

□ 근거 규정
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(동산의 이전비보상 등)

□ 보상 기준

-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별표4의 주택건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

〈이사비 기준(별표 4)〉

| 주택건평기준          | 이사비 |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노임  | 차량운임  | 포장비              |
| 33㎡ 미만          | 3명분 | 1대분   | (노임+차량운임) × 0.15 |
| 33㎡ 이상 49.5㎡ 미만 | 4명분 | 2대분   | "                |
| 49.5㎡ 이상 66㎡ 미만 | 5명분 | 2.5대분 | "                |
| 66㎡ 이상 99㎡ 미만   | 6명분 | 3대분   | "                |
| 99㎡ 이상          | 8명분 | 4대분   | "                |

- \* 노 임 : 통계청이 작성·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기준(125,427원)
- \* 차량운임 :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·공표한 5톤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 기준(219,000원)

□ 지급액

(단위 : 원)

| 주택건평기준              | 이사비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| 노임        | 차량운임    | 포장비     | 합계        |
| 33㎡ 미만              | 376,281   | 219,000 | 89,292  | 684,570   |
| 33㎡ 이상<br>~49.5㎡ 미만 | 501,708   | 438,000 | 140,956 | 1,080,660 |
| 49.5㎡ 이상<br>~66㎡ 미만 | 627,135   | 547,500 | 176,195 | 1,350,830 |
| 66㎡ 이상<br>~99㎡ 미만   | 752,562   | 657,000 | 211,434 | 1,620,990 |
| 99㎡ 이상              | 1,003,416 | 876,000 | 281,912 | 2,161,320 |

□ 근거 규정
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

□ 보상 기준

- 연고자가 있는 분묘(유연분묘)에 대한 보상은 분묘이전비,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
- 연고자가 없는 분묘(무연분묘)에 대한 보상은 유연 분묘이전비 및 잡비의 50%로 산정

- \* 분묘이전비 : 4분관 1매(10,000원), 마포 24m(241,000원) 및 전지 5권(19,000원), 제레비(395,000원), 노임 5인분(834,500원) 및 운구차량비(358,500원)
- \* 잡비 : 분묘이전비(제레비용과 운구차량비 산정액의 30%)
- \* 이전보조비 : 100만원

- \* 분묘이전비 구성요소별 단가는 한국감정협회 광주전남, 전북지회 평가기준에 의함  
(운구차량비는 유연분묘는 전세버스 1회, 무연분묘는 2.5톤화물차 1일 8시간 기준 적용)

□ 지급액

(단위 : 원)

| 구분 | 분묘이전비①    |                | 잡비<br>(①× 30%) | 이전보조비     | 합계        |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| 분관<br>제레비 | 마포<br>전지<br>노임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운구차량비     |
| 유연 | 단장        | 1,499,500      | 358,500        | 557,400   | 1,000,000 | 3,415,400 |
|    | 합장        | 2,249,250      | 358,500        | 782,325   | 1,000,000 | 4,390,070 |
|    | 아장        | 599,800        | 358,500        | 287,490   | 1,000,000 | 2,245,790 |
|    | 3합장       | 2,849,050      | 358,500        | 962,265   | 1,000,000 | 5,169,810 |
|    | 4합장       | 3,298,900      | 358,500        | 1,097,220 | 1,000,000 | 5,754,620 |
|    | 5합장       | 3,598,800      | 358,500        | 1,187,190 | 1,000,000 | 6,144,490 |
| 무연 | 6합장       | 3,748,750      | 358,500        | 1,232,175 | 1,000,000 | 6,339,420 |
|    | 단장        | 749,750        | 93,400         | 252,940   | -         | 1,096,090 |
|    | 합장        | 1,124,625      | 93,400         | 365,408   | -         | 1,583,430 |

- \* 합장은 단장 분묘이전비에 50% 가산(운구차량비 제외)되며 아장 및 3합장이상은 감정평가협회 분묘 평가지침 비율 적용
- \* 무연은 유연 분묘이전비의 50% 적용

- 적용대상 :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도로·하천 등 모든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적용
  
- 적용시기 : 2019년도 보상단가 결정일로부터 2020년도 보상단가 결정시 까지

\* 본 단가결정 이전 산정시에 누락된 경우의 보상금 산정은 2019년 보상기준 적용